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달러변액적립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만15세 ~ 70세	종신	일시납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 시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US \$20,000 이상이며, US \$10 단위로 납입가능하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1회 US \$50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판매개시일 3개월 이후부터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계약자가 추가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최초 가입시 납입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 배 이내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일시납보험료가 US \$100,000 초과인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일시납보험료 US \$100,000 초과 ~ US \$300,000 이하	일시납보험료 US \$100,000 초과금액의 0.7%
일시납보험료 US \$300,000 초과 ~ US \$500,000 이하	일시납보험료 US \$300,000 초과금액의 1.0% + US \$1,400
일시납보험료 US \$500,000 초과 ~	일시납보험료 US \$500,000 초과금액의 1.2% + US \$3,400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이하 “연체보험료”라 한다)이상과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을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납입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 (2) 제1호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1%로 계산한 금액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가’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해당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이 계약의 표준이율로 계산

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 ‘나’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경과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표준이율 + 1%」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후부터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판매개시일 3개월 이후부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US \$100이상 US \$10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인출 후의 계약자적립금은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

다. 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US \$2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라. ‘가’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다만,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

다.

마.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 따라 계산한다.

바.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 적립한다.

다.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한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다만, ‘가’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13.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나. 계약자의 기본보험료의 감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에 의하여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4.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2차월 이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으로 한다.

나.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이 납

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다만, 특약보험료 제외)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최저사망보험금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의 ‘인출(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인출(감액)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 가.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라 한다.) 이상인 경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이를 '계약유지보장'이라 한다.
- 나. '계약유지보장'은 가입시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할 수 없다.
- 다.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펀드의 유형'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달러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으로 인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미만이 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 라.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유지보장'은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 (1) 해당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의 금액인 경우
 - (2)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펀드의 유형'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달러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 (3)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펀드의 유형'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달러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 마. 계약자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된 이후 '계약유지보장'의 재신청은 할 수 없다.
- 바.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될 경우 계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9.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한다.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 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달러형)**: 글로벌 시장의 채권에 투자하는 USD 통화표시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②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달러형)**: 이머징 시장의 채권에 투자하는 USD 통화 표시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2) ‘(1)’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3) ‘(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다.

(4)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영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운영보수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달러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320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8780822%)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달러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320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8780822%)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다음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달러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40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1095890%)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0534247%)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달러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40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1095890%)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0534247%)

(3) ‘(2)’에서 정한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의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회사는 운영보수에서 그 초과분을 총당한다.

- (4)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 및 ‘(2)’에서 정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각 펀드별 기본보험료는 US \$50 이상으로 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된다. 다만, 각 펀드별 추가납입보험료는 US \$50 이상으로 한다.
-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달러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4)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다.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자는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달러형) 펀드의 편입비율이 60% 미만 이 되도록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다.
- (5) ‘(1)’ 내지 ‘(4)’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의 ‘(3)’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를 선택하거나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다.
- (6) 회사는 ‘(4)’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만, 이전하는 펀드적립금이 US \$100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

- (7) 회사는 '(4)'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와 US \$2 중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6)'의 현금이전시 공제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 (8)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6)'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 펀드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된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자동재배분된다.
- (3) '(1)'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달러형) 펀드의 편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4)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바.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1)’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한다.

사.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US \$0.01 (1 cent)를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1,000 좌 단위로 US \$1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US \$1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US \$10로 한다.)

$$\text{좌당 기준 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아.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23. 기타 사항’ ‘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평가한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자.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차.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⑤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된 경우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카.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23. 기타 사항’ ‘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평가한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개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④ 기타 ‘①’ 내지 ‘③’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

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1.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과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23. 기타 사항'의 '다'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

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의한 자금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2.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평가한다.

23. 기타 사항

가. 보험가입금액

일시납보험료

나. 통화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로 하며, ‘2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아. 초기투자자금’과 ‘카. 특별계정의 폐지’ 및 ‘23. 기타 사항’의 ‘사. 계약자 적립금의 원화 평가에 관한 사항’에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한다.

다.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과 승낙일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② 추가납입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라.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마.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이후 보험기간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1) 보장계약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바.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 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사. 계약자 적립금의 원화 평가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 적립금의 원화 평가는 평가일 기준 “한국은행 공시 환율”의 증가 환율을 적용한다. (이하 “기준환율”이라 한다.)
- 2) 평가일 증가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고시일의 증가 환율을 적용한

다.

-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 자.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 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
- 차.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카.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